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35 | 2026. 6. 8 (2026. 6. 1 ~ 2026. 6. 7)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산업통상부>는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8,002.3억원(국비 5,111.1억원, ’26~’30년) 규모로 최종 확정되어 퍼지컬AI 기술 자립을 이끌 초대형 국책사업이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법무부>는 「조정을 통한 국제적 화해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상거래 분쟁에서 조정을 통한 합의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여 분쟁해결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및 보호위원회 신고 의무대상과 신고 방법 등을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 대상의 범위를 정하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제도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원칙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설희의원 등 11인)」,

국내에서 생산, 판매된 SAF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2인)」,

조롱·혐오정보를 반복적·악의적으로 게재·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해당 정보의 반복적 게재·유통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의원 등 12인)」,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범지역 지정·운영, 학습 데이터 구축, 성능인증 체계 마련 등
피지컬 AI 개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정아의원 등 10인)**」 ,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이번 주는 예정된 의사일정이 없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예산 최종 확정(산업통상부)
-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교육부)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기획예산처)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법무부)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설희의원 등 11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2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 사회재난대책법안(이광희의원 등 16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의원 등 12인)
-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정아의의원 등 10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의원 등 11인)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3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방송통신(TMT)] 개인정보위,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발표 - 올해 6월부터 위험 기반 실태점검 본격 실시
- [건설/부동산] 설계·감리상 과실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기각시킨 사례
-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관련 상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2027. 1. 1. 시행 전 점검이 필요한 주요 쟁점
- [방송통신(TMT)]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에너지·자원]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5. 20. - 2026. 6. 2.)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예산 최종 확정 - 피지컬AI 기술 자립 이끌 초대형 국책사업 시동	2026-05-26
-------	--	------------

산업통상부가 주관하여 추진 중인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8,002.3억원(국비 5,111.1억원, '26~'30년)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음

동 사업은 ①자동차, ②IoT·가전, ③기계·로봇, ④방산 등 4대 주력업종별로 첨단 AI제품 생산에 필요한 ①맞춤형 AI반도체, ②반도체가 탑재될 모듈, ③구동 AI 소프트웨어 등 전주기(풀스택)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임

분야	개발 내용
①자동차	차세대 자율주행차 제어 시스템 등에 탑재될 AI칩 및 소프트웨어
②IoT·가전	지능형 가전 등 스마트 공간을 위한 온디바이스 AI칩 및 소프트웨어
③기계·로봇	제조현장, 식음료 등의 서비스를 위한 차세대 AI 협동로봇 탑재용 AI칩 및 소프트웨어
③기계·로봇	일상 공간에서 가사를 지원하는 휴머노이드 탑재용 AI칩 개발 및 소프트웨어
③기계·로봇	방제·수확·운반 등 농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로봇 탑재용 AI칩 및 소프트웨어
④방산	상황을 자율적으로 인식하고 비행하는 공중 무인플랫폼 탑재용 AI칩 및 소프트웨어

온디바이스 AI반도체*는 서버형 AI반도체(GPU 등)와 달리 지배적 강자가 없고, 탑재될 수요기업 제품과의 호환이 중요해 ▲유망 팹리스 기업과 ▲주력산업 글로벌 수요기업을 모두 보유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분야임. 산업부는 온디바이스AI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번 대규모 국책사업을 6월 중 공고하여, 7월 내 신속히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서버로의 데이터 송수신 없이 기기 자체에서 실시간 저전력으로 연산·추론하는 AI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시장: ('24) \$173억 → ('30e) \$1,033억 (출처: Market.us, '24.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사회 의결·신고 및 ISMS-P 인증 의무대상 기준 마련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신설에 따른 요건·항목 구체화 등	2026-06-02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음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26.3.10. 공포, 9.11. 시행)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하 ‘ISMS-P 인증’)을 의무화하였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단계부터 정보주체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 신속 대응하도록 하였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추진되었음

① CPO 이사회 의결 및 개인정보위 신고 의무 대상

CPO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해제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대상이 되는 기준을 마련하였음. CPO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 신고 의무 대상을 현행법상 전문 CPO 지정 의무 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음

또한, CPO 지정·변경·해제 시 신고 방법·절차를 구체화하여, 신고 의무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시 1개월 연장 가능) 신고서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하도록 하였음

② ISMS-P 인증 의무 대상

ISMS-P 인증 의무 대상이 되는 범위를 구체화하였음. ①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중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이동통신사업자 ③ 본인확인기관 ④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고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국내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3천만명 이상인 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ISMS-P 인증을 받도록 하였음

③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관련 개정

유출 가능성 통지의 요건·시기·항목을 구체화하였음.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알게되었거나 ②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유통되고 있음을 알게된 때에는 이를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 통지하도록 하였음. 또한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뿐만 아니라 위조·변조·훼손의 경우에도 통지·신고하도록 하였음

④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정비하였음. 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하고 경고를 한 경우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 재발 시 과태료 가중 횟수에 반영*되도록 하고, ②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금액을 법제처 지침에 맞추어 정비하였음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재정경제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6-02 시행

일정 가격 이상인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대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청년·청년창업기업 및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사용료를 인하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2026-12-03 시행 예정
-----	--------------------------	------------------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 특례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 개발사업시행자 중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의 ‘세대수’를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6-03 시행
-------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위해성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를 권고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59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방법 등을 정하며, 위해성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폐기 절차, 관련 정보 등의 삭제 권고 및 그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2026-06-03 시행

금융회사의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91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상생금융 추진을 위한 금융회사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정하고, 납품대금 연동 회피행위의 세부적 유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6-03 시행 예정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79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을 인접한 시·도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역 등으로 정하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로 하여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 및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예산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2026-09-03 시행 예정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및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법무부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2026.06.04. ~2026.07.14.

우리나라는 2019년 8월 「조정을 통한 국제적 화해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에 서명하여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국제상사분쟁에서 통상 중재가 활용되었으나, 국가 간 중재역량의 격차, 과도한 시간과 비용 등의 한계가 노정되자 저비용·신속한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이 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협약은 조정을 통해 성립한 합의에 대하여 간이한 절차를 통해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조정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그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행 민사법상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도출된 합의는 단순한 계약에 불과하여,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상사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를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상거래 분쟁에서 조정을 통한 합의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여 분쟁해결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문의처 :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전화: 02-2100-4539, 팩스: 02-2100-0416)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6.06.02. ~2026.07.13.
----------	---------------------------------------	-----------------------------

피해구제에서 배상체제로 전환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526호, 2026. 4. 7. 공포, 2026. 10. 8. 시행)됨에 따라

배상 심의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종류, 구성과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내용을 정하는 한편, 손해배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전화: 044-201-6744, 팩스: 044-201-6823)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04.
~2026.07.14.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411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을 완료한 달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물안전법」상 정기안전점검은 생략 가능하도록 하여 관리주체의 비용 등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전화: 044-201-4596, 팩스: 044-201-5553\)](tel:044-201-459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01.
~2026.07.13.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여 기업의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①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안 별표 1의5)

- 법 제6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때 고려사항을 명시함

②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투자 감경에 관한 사항 (안 제60조의2제5항 및 별표 1의5)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규모 및 지속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 등 사항 등 투자 감경의 고려 사항 및 감경 상한, 법에 따른 투자 감경의 제외 대상을 명시함

③ 법 제64조의2제7항제4호에 따른 과징금 면제에 관한 사항 (안 제60조의2제6항)

- 그 밖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술을 지원받아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④ 부과 과징금 결정에 관한 사항 (안 별표 1의5)

-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및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 외에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규모 및 영향 등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중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추가하여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함

※ 문의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전화: 02-2100-3161, 팩스: 02-2100-3007\)](tel:02-2100-3161)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며, 국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정비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및 보호위원회 신고 의무대상과 신고 방법 등을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 대상의 범위를 정하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제도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개인정보 관리 수준 및 실태 파악을 위한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및 보호위원회 신고 의무 대상 (제32조, 제63조 별표2)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및 보호위원회 신고 의무 대상을 전문 CPO 지정 의무 대상(① 연 매출액 또는 수입이 1,800억원 이상인 자로서, 5만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② 재학생 수 2만 명 이상인 대학 ③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상급종합병원 ④ 공공시스템운영기관)으로 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변경·해제 시, 보호위원회 신고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보호위원회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②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 대상 구체화 (제34조의9, 제63조 별표2)

-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중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고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국내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3,000만명 이상인 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
- 인증 의무대상이 의무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인증 내용을 표시·홍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③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제도 관련 사항 정비 (제30조의2,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8조의7)

- 유출등 가능성 통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기기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알게 된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불법적 거래·유통되고 있음을 알게 된 때, 유출등 가능성을 인지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 통지하도록 규정
- 개인정보가 위조·변조·훼손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도 개인정보 유출등 통지 및 신고를 하도록 함
- 개인정보 유출등 통지 항목에 비밀번호 변경 방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계정 보호조치 추가

※ 문의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전화: 02-2100-3057, 팩스: 02-2100-300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	2026-06-04 발의
-------	---	---------------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보험가입,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2월 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지급 사고에서 드러나듯,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은 급격히 성장한 시장 규모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특히 최근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실제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의 실시간 연동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이 부재하다는 점,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유 잔고와 내부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원칙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등)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2026-06-01 발의
-----------	------------------------------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해당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될 예정으로,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으로 운영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적용기한이 일몰 연장의 형태로 유지되다 보니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됨. 중소기업은 장기적인 인력 확보와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청년 근로자 역시 제도를 지속적인 지원 정책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과 낮은 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현행 200만원의 감면 한도만으로는 청년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기한 없는 세제 지원으로 전환하고, 연간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인력 유입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제1항)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2인)

2026-06-02 발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시행과 주요국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이하 “SAF”) 혼합의무 도입에 따라 글로벌 항공연료 시장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중립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SAF 사용 확대가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SAF는 기존 항공유 대비 생산비용이 높은 구조로 초기 시장 형성과 설비 투자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자국 내 SAF 생산 기반을 적극 확대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국내 생산설비와 원료 공급망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별도의 지원 없이 의무 이행이 본격화 될 경우 수입 제품 의존도가 확대되고 국내 정유·항공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 될 우려가 있음. 현재 SAF(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생산 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은 부재하여 국내 생산 시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내에서 생산, 판매된 SAF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항공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의35 및 제144조제5항 신설)**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2026-06-05 발의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탄소중립 실현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친환경자동차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 차량에서 무공해 차량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현실적인 선택지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친환경자동차 구매 부담이 증가하여 보급 확산이 둔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09조제3항·제6항·제9항)**

행정안전위원회

사회재난대책법안(이광희의원 등 16인)

2026-06-04 발의

최근 10·29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마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사회재난에 관한 별도 법령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한계가 있는 반면에,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음

이에 사회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특별예방대책의 수립·시행,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의 지정·관리,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운영,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 피해 방지 조치, 국가·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에 한정하여 규정한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각각 개선·보완하는 등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2인)

2026-06-04 발의

일간베스트저장소(일명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고 있음. 이는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피해를 넘어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증폭시키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한 폭력·차별 선동 및 증오심 조장 정보를 불법정보로 신설하고 있음. 그러나 명예훼손형 불법정보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고, 개정법상 혐오·차별 선동 정보는 열거된 차별사유와 폭력·차별 선동 또는 증오심 조장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특정 정치적·역사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모욕·조롱·희화화 표현은 규율 대상에 포섭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희화화 표현,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조롱·비하 표현 등은 사실의 적시나 허위·조작된 사실의 유포보다는 심각한 수준의 모욕적 언사 또는 집단적 희화화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 및 2026. 7. 7. 시행 예정 개정법상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규정만으로는 규율에 한계가 있음. 한편,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핵심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절대적 권리는 아니며, 타인의 명예와 인격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표현까지 무제한적으로 보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에 첫째,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횟수·유통 규모 또는 게시 양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및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둘째, 조롱·혐오정보를 반복적·악의적으로 게재·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해당 정보의 반복적 게재·유통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8 신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삭제·접속차단·노출제한·수익화 제한 등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롱·혐오정보의 반복적 유통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치하여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력이 현저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8 신설)

넷째, 일정 기간의 운영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8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2026-06-05 발의

현재 전 세계 AI 패러다임은 가상 세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술력, 탄탄한 제조업 가치사슬, 그리고 고도화된 AI 역량이라는 3대 핵심 역량을 모두 보유한 국가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고도화된 융합이 요구되는 피지컬 AI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독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일반적 규정과 로봇·자율주행·드론 등 각 산업별 개별법으로 분절되어 있어,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특유의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음. 특히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이 실제 물리 공간에 적용되기 위해 필수적인 시범지역 운영, 전용 학습 데이터 구축, 고도화된 성능인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관통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기술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피지컬 AI 개발을 위한 통합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범지역 지정·운영, 학습 데이터 구축, 성능인증 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2026-06-05 발의

현행법은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여행사 중에는 관광객의 여행자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하고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그 여행사가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하면 해당 여행사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므로, 현행법이 의료관광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보험대리점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제4항 단서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2026-06-02 발의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거짓 채용 광고 금지,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구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임금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는 담고 있지 않음

이에 구인자는 임금에 대해 ‘협의 후 결정’ 또는 ‘내규에 따름’과 같은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여 채용광고를 내고 있고, 대다수의 구직자는 근로 조건의 핵심인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채용절차에 응하게 되어 추후 낮은 임금을 확인하고 지원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하여 발생하게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됨

이에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조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2026-06-05 발의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특히 산업재해가 도급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원·하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2026-06-05 발의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다양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 요인 관리에 효과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석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기술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2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6/8(월) 14:00	왜 반도체도시 광주인가?: 반도체 FAB 광주 유치 전략 토론회	정진욱 의원실	광주시의회 예결특위회의실
	6/8(월) 14:00	국가 "전략자산" 금시장 관리 시스템 구축 국회토론회	오세희·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6/8(월) 16:00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토론회	이주영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6/9(화) 10:00	성공적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방안	김정호·안도걸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6/9(화) 14:00	양수발전소 신규 건설, 이대로 괜찮은가?: 제42회 우이령 포럼	서왕진·박지혜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6/10(수) 14:00	LOCAL is ALIVE: 마을기업 활성화 정책제안 국회토론회	이달희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6/11(목) 14:00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	민병덕·정태호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대강당
자료집 등	6/8(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7호(통권 제31호) 발간	국회도서관	
	6/10(수)	「금주의 서평」 제2026-22호(통권 제781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3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 료 집 등	6/2(화)	「NABO Focus」 제161호	국회예산정책처	
	6/3(수)	「금주의 서평」 제2026-21호(통권 제780호)	국회도서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6/1(월)	방송통신(TMT)	개인정보위,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발표 - 올해 6월부터 위험 기반 실태점검 본격 실시
6/1(월)	건설/부동산	설계·감리상 과실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기각시킨 사례
6/2(화)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6/4(목)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관련 상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2027. 1. 1. 시행 전 점검이 필요한 주요 쟁점
6/4(목)	방송통신(TMT)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4(목)	에너지·자원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6/5(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5. 20. - 2026. 6. 2.)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